

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검 토 보 고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1998년 11월 19일

나. 회부일자 : 1998년 11월 19일

3. 제안이유

- 외국인 투자촉진과 지방의 자율·책임성제고 및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제도 개선대책에 따라
- 정부에서는 지난 '98. 7. 16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한 바 이와 관련한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4. 주요골자

-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 특례적법
 - 공유재산 사용시 사용료 감면
 - 전액감면 : 외국인 투자액이 미화 2천만달러이상인 제조업, 고용창출 효과가 300명이상인 제조업, 전체생산

량의 50%이상 수출하는 업체로 부품을 100% 국내에서 조달하는 외국기업등

- 일부감면 : 전액감면에 비하여 투자액 및 고용효과가 낮은 외국인 기업을 대상으로 감면을 차등적용

· 공유재산 매수시 매수금액 감면

- 전액감면 :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개발조성한 재산매수시 투자액이 미화 30억달러이상인 공장부지 매수시, 1일평균 고용인원이 1천명이상 규모의 공장부지

- 일부감면 : 전액감면에 비하여 투자액 및 고용효과가 낮은 외국인 기업을 대상으로 감면을 차등적용
(안 제19조의 2, 제19조의 3, 제23조의 3, 제39조의 4)

○ 공유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 대상확대

· 현행 공유재산 매각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대상

- 공공사업으로 인한 그 철거민에게 주거용으로 매각시, 소규모 토지매각시, 사유건물이 있는 공유토지의 매각시등에 한하고 있으나

⇒ 지방자치단체간의 업무용토지 매각시, 교육청의 학교용지 매각시,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,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점유 사용자에게 매각할 경우등을 추가하여

-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한 매각대금의 연체 및 이자부담을 줄이고자 함(안 제22조)

○ 공유재산(건물)사용자 산출방식 개선

· 현재까지 공유재산(건물)의 사용료 산출시 경계가 불분명할 때 건물부지 사용료를 건물바닥 면적의 3배에 대한 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공유재산 사용자에게 과도한 사용료를 부담하게 함에 따라

· 이를 건물의 실제 사용비율에 따라 면적을 계산 사용료를 납부토록 하여 사용인의 부담을 경감코자 함(안 제25조)

○ 공유재산(갑종재산) 매각면적의 기준확대

·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폐천부지의 면적을

- 시의 동지역일 경우 현행 1,321m²이하에서 3,300m²로
- 읍면지역은 3,300m²이하에서 6,600m²이하 등으로 상향 조정하여 주민편익에 기여하고자 함(안 제39조의 2)

○ 청사설계시 사무실의 칸막이 설치에 대한 규정신설

· 각 사무실의 칸막이를 내력벽 또는 건축물의 구조안전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동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하여 불필요 예산을 절감토록 함(안 제47조)

○ 관사사용료 면제대상 확대

· 현행 조례에는 관사사용료를 면제하는 대상이

-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, 관사를 일차

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로 되어 있으나
⇒ 시설의 보호·감시등을 위하여 해당공무원이 사용
하는 경우를 추가(안 제57조)

5. 검토의견

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
이는 공유재산 관련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
('98. 7. 16)되어 외국인 투자촉진과 도민편익 증진을 위하여
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

그 주요내용으로는

-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유재산을 사용할때는 외국인 투자액이
미화 2천만달러이상인 제조업과 고용창출 초과가 300명이상
인 제조업 및 전체생산량의 50%이상 수출하는 업체로 부품을
100% 국내에서 조달하는 외국기업등에는 사용료를 전액
감면하고 그외에는 감면율을 차등적용토록 하였고
-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유재산 매수시에는 외국인 투자
유치를 위해 개발조성한 재산매수시와 투자액이 미화 30억
달러이상인 공장부지 매수시 및 1일평균 고용인원이 1천명
이상 규모의 공장부지 매수시 전액감면하고 그외에는 차등
적용토록 하는등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적용토록 하였으며
- 수의계약 매각범위등에 있어서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폐
천부지 면적을 시의 동지역일 경우 현행 1,320제곱미터 이하

에서 3,300제곱미터 이하로 하였고

읍면지역의 경우 3,300제곱미터 이하에서 6,600제곱미터 이하로 상향조정하여 주민편익을 기여하고자 하는등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붙임

○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